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
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

인 천 광 역 시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9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2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·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 현상 방지 등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『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』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며,
-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시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사업명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
- 개 소 수 : 1개소
- 위탁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

□ 참고 사항

-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·위탁운영 계획 1부.
- 관계법령 1부.

<붙임>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·위탁운영 계획

- ◆ 『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』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 도모
- ◆ 사회복지종사자의 출산·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, 복지인력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『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』를 설치·운영

I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
 -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II 추진방향

-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**민간기관 위탁 운영, 공모제에 의한 운영기관 선정**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 인력풀 운용으로 복지인력 인프라 및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
- 출산·육아 휴직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질 저하를 대체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통한 예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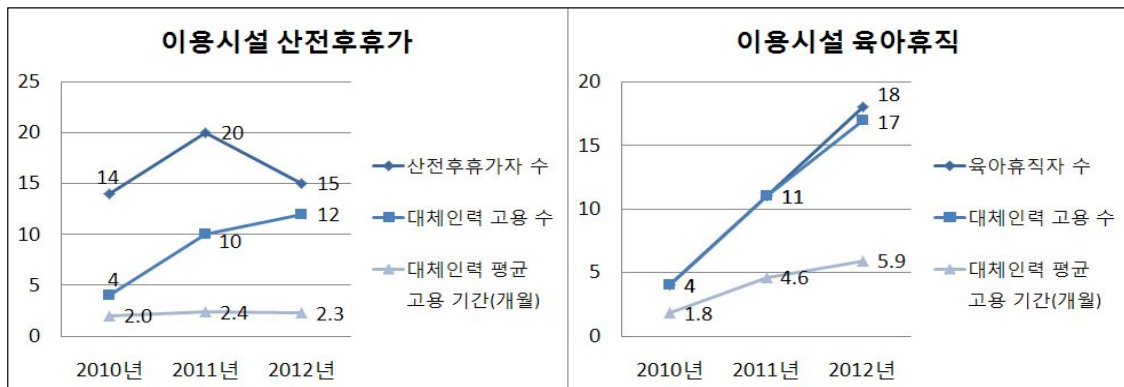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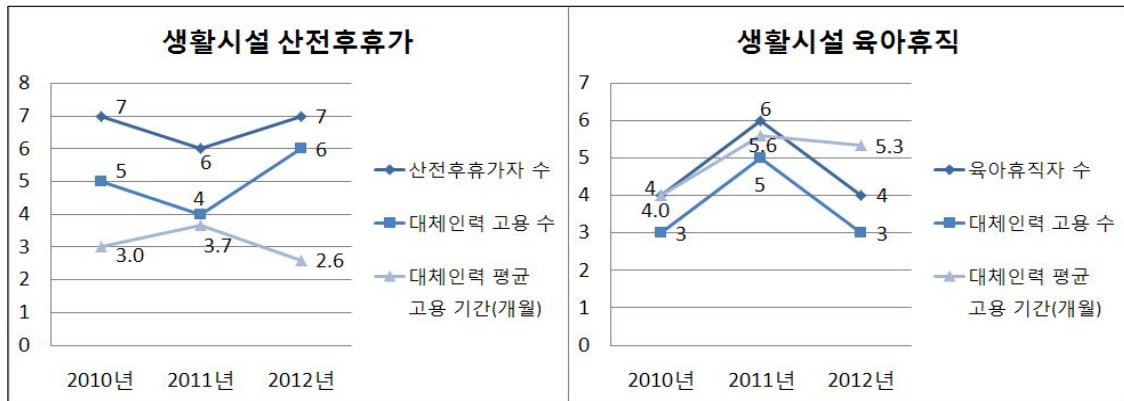
Ⅲ

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용 현황

□ 사회복지시설 산전·후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사용 현황

<자료출처 : 201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연구>

○ 시설의 산전·후 휴직자와 육아휴직자의 수, 대체인력, 고용기간



- 육아휴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체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산전·후 휴가의 경우 생활·이용시설 모두 대체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의 격차가 존재함.
- 출산·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 규모는 2011년 61명, 2012년 62명, 2013년은 70명으로 추정.

○ 대체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차원적 복지후생 방안으로 필요.
- 이용시설은 67.9%, 생활시설은 82.7%가 필요하다고 응답.

○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시 활용 의향

- 이용시설은 96.2%, 생활시설은 93.3%가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응답.

IV

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·운영 계획

1 설치개요

- 명 칭 : 『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』
- 운영방식 : 민간위탁 운영 (공모를 통한 위탁자 선정)
-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
- 운영인력 : 1명 (전담사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)
- 센터개소 : 2014. 4월중
- 운영재원 : 58,000천원 (전액 시비, 2014년 예산)
 - 인건비, 운영비, 장비비(컴퓨터, 프린터 등 사무집기)

2 주요기능

-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(대체 인력지원자 인력풀 운용)
- 기간제 파견근무자 모집 및 수요기관 조사, 상담업무 등
- 대체인력 교육, 사업홍보, 간담회 등

3 위탁조건

- 운영경비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예산은 수탁운영자가 자부담하여 운영
- 운영에 따른 사무실 등 설치 공간 등은 수탁운영자가 확보 (단, 사무용집기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가능)
- 위탁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 및 제반 관련 법규 준수

1 위탁방식

- 위탁운영자 선정 :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
 - 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 - ※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공개경쟁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
 -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
- 위탁운영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
- 위탁운영시점 : 2014. 4월중

2 위탁자 선정 계획

- **위탁운영법인 모집 및 선정방법**
 - 모 집 : 공고에 의한 희망자(법인) 모집
 - 선 정 : 자체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법인 결정
 - ※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“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” 구성
 - 공개모집결과 1개 기관 신청시 별도 재공고하지 않고 심사를 통하여 위탁 여부 결정
- **위탁법인 선정 심사기준**
 - 법인수탁능력 및 공신력
 -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
 - 시설의 접근성
 - 사업계획의 타당성
 - 재정운용 및 시설설치 확보 등

○ 위탁운영의 자격

- 인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거나 지부가 등기상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
 - 수탁에 필요한 인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능력이 있는 법인
 -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
 - 책임능력, 공신력이 있는 법인
 - 위탁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

3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위원회 구성근거

-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

○ 위원회 구성 : 위원수 7인, 간사 1인

- 당연직 : 1명 (관련공무원)
- 위촉직 : 6명 (시의원, 관련전문가, 시민단체 등)
- * 위원장은 심사위원장 호선으로 선출

구 분	인원	선 정 방 법	비 고
계	7명		
공무원	1명	사회복지봉사과장	당연직
시의원	1명	시의원 추천 (문화복지위원회 소속)	위촉직
관련 전문가	2명	대학교수, 인천발전연구원	"
시설, 단체대표	3명	사회복지시설, 법인, 시민단체 대표자	"
간사	1명	복지기획담당	

○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

- 일 시 : 2014. 3월중 (일정 추후협의 결정)
- 참석대상 : 위원 7명
- 심의방법 :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심사 평가
- 심의내용 : 위탁운영법인 선정

4 배점비율 및 선정방법

○ 배점비율

구분	계	법인수탁 능력	법인의 사업실적	사업계획 타당성	재정 운용	시설설치 확보
배점	100	15	15	20	20	30

○ 선정방법

-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인의 사업계획 발표(질의응답 포함) 자료를 평가하여 채점
- 심사위원 각자가 심사표에 신청 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
-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법인 선정
 - ※ 단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획득한 법인 선정
-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의하고, 재심외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
- 신청법인이 단독 응모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자로 선정

○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및 위원질문

- 발 표 자 : 법인대표 또는 대리인 1명
- 발표순서 :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
- 발표내용 :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·비전 제시 등
- 발표시간 : 15분이내(법인발표 : 5분, 위원 질의응답 : 10분)

5 심사발표 및 협약 체결

- 선정결과 통보 : 2014. 3~4월중
- 선정된 위탁법인과 협약 체결 : 2014. 3~4월중

VI 기대효과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직업만족도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
- 사회복지인력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 지원체계(안정적 직무환경) 조성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

- 제5조(시장의 책무)**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2.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, 연구 사업
3.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
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